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감사담당관)

의안번호	제294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(2024. 5. 23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반부패·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청렴정책자문협의회 설치(안 제7조 ~ 제12조)
- 마. 청렴도 조사 및 교육 (안 제13조 ~ 제15조)
- 바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사. 구정 청렴시책사업 관련 포상 등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4. 4. 18 ~ 5. 8. (20일간), 접수 의견 없음

4. 점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성북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,
 - 안 제 4조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·청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·추진하며, 교육 및 홍보사업, 청렴도 평가·조사, 청렴 문화 체험·실천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를 두도록 하였으며, 협의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안 제14조에서는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그 설문조사는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1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부패방지권익위법)」¹⁾에 근거하여 성북구 공직자와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등 청렴 구정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가.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3. “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.
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
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
-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